

『인격주의 생명윤리』 발간규정

제 정 : 2011년 5월 20일
1차 개정 : 2014년 5월 20일
2차 개정 : 2017년 1월 16일
3차 개정 : 2018년 8월 20일
4차 개정 : 2019년 2월 11일
5차 개정 : 2019년 8월 21일

I.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의 편집, 논문의 투고,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명칭)

본 연구소의 학술지 명칭은 『인격주의 생명윤리』 (*Personalism Bioethics*)로 한다.

제3조(학술지의 편집 방향 및 구성)

- 1) 『인격주의 생명윤리』는 인격주의 생명윤리에 기초하는 연구 논문을 소개하고 그 논의를 진작시켜 생명존중 실천운동과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발행목적으로 한다.
- 2) 『인격주의 생명윤리』는 논문과 의론(오피니언), 학술자료, 서평으로 구성된다.

제4조(학술지 발간 시기)

『인격주의 생명윤리』는 매년 2회, 7월 30일(여름호), 1월 30일(겨울호)에 발간한다.

II.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 (편집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 1)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인격주의 생명윤리』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수록될 논문의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 (편집위원의 임명 및 임기)

- 1) 편집위원은 본 연구소의 기본 정신에 투철하고 학술 활동이 뛰어난 학자들 가운데 전국적 분포를 고려하여 추천하고 연구소장이 임명한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 2)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 1)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학술지와 관련하여 제반 대외 업무를 수행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 및 출판회의를 주관하고, 원고를 두고 받아 관리하며, 심사를 진행한다. 편집회의에 투고된 원고를 보고하면서 각 논문마다 전문분야에 맞는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해당 논문에 대한 3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관리한다.
-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2회 이상 학술지의 편집방향과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
- 4)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투고 논문의 접수와 관리, 접수된 논문의 심사 의뢰, 심사결과의 심의 처리, 학술지 편집 및 발간 등이다.
- 5)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기타 출판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 6) 편집위원은 게재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로 활동한다.

제8조 (투고원고의 심사)

- 1) 편집위원회는 『인격주의 생명윤리』 심사를 위해 『인격주의 생명윤리』 심사규정을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인격주의 생명윤리』에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 등에 관한 지침(『인격주의 생명윤리』 원고작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둔다.

제9조 (규정 개정과 시행)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Ⅲ. 발행규정

제10조 (학술지 간행의 목적)

『인격주의 생명윤리』는 인격주의 생명윤리에 기초하는 연구 논문을 소개하고 그 논의를 진작시켜 생명존중 실천운동과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학술지 구성)

투고될 모든 원고의 주제와 문제의식은 『인격주의 생명윤리』의 기본취지에 부합되어야 한다. 『인격주의 생명윤리』는 크게 '특집논문' '연구논문', '의론(오피니언)', '학술자료', '서평'으로 구성된다.

- 1) '특집논문'란에는 해당 호의 특집 주제와 관련된 학술 논문들을 실는다.
- 2) '연구논문'란에는 특집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를 다룬 학술 논문들을 실는다.
- 3) '의론(오피니언)란에는 윤리적 쟁점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실는다.
- 4) '학술자료'란에는 연구에 도움이 될 자료를 실는다.
- 5) '서평'란에는 국내외 저서, 번역서에 대한 평을 실는다.

제12조 (학술지 간행의 횟수 및 일정)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인격주의 생명윤리』는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매년 7월30일(여름호), 1월30일(겨울호)에 간행한다.

IV. 투고규정

제13조 (논문 투고)

『인격주의 생명윤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이는 다음 각 호의 요구를 채워야 한다.

- 1) 『인격주의 생명윤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이는 『인격주의 생명윤리』 원고 작성에 관한 세부 지침(별첨)에 따라 원고를 작성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 2) 원고 종류
 - (1) 논문: 자유주제의 생명윤리 논문
 - (2) 의론(오피니언): 윤리적 쟁점에 대한 본인의 의견
 - (3) 서평: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생명윤리 관련 저서에 관한 평
- 3) 원고 분량
 - (1) 논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00매에서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 (2) 서평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30매에서 5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 4) 원고 접수
 - (1) 시기: 투고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단, 발간 시기와 관련한 논문 접수에 대하여 여름호는 5월15일, 겨울호는 11월15일에 마감한다.
 - (2) 방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온라인 논문 투고 웹페이지(<http://bioethics.jams.or.kr>)를 통하여 투고한다.

문의처: (0659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반포동)

서울성모병원 별관 2층 216호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전화 02-2258-7221, 7223 전송 02-3476-5954

전자우편 personalism1004@daum.net

홈페이지 www.bioethics.catholic.ac.kr

- 5)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6) 투고 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 부치지 않는다.
- 7) 투고자의 사전 요청이 없는 한, 원고는 편집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형식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 (공동 저자의 표기)

공동 저술된 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제1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인간 대상 연구 사전 IRB 심의)

투고 시 인간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설문, 상담, 면담, 관찰, 녹취, 동영상 기록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한 IRB 심의와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윤리 규정 준수)

투고 시 모든 논문은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연구윤리에 저촉될 경우 해당규정에 따라서 게재 취소 및 향후 투고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

제17조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가 소유한다.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18조 (논문 투고시 제출 서류)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에 아래와 같은 문서를 함께 제출한다.

- 1) “원고게재신청, 연구윤리준수확약 및 저작권 활용 동의서”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 사용)
- 2)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확인서”
(유사율과 함께 유사 분석 정보가 기록된 요약보기 결과)

제19조 (원고심사)

투고된 원고는 본 학술지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V. 연구윤리 규정

제20조 (목적)

본 규정은 본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학술지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정의)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 결과물 또는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없이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위조, 변조, 표절이 개입된 연구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상기한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 혹은 출판을 위해 심사 중에 있는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제2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 적용된다.

제23조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 2) 연구자는 연구수행에 있어 위조, 변조, 표절의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하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가 없어야 한다.
- 3) 연구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가를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4)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5)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6)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 7)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8) 연구자는 본조 제2항-7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9)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 10)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 의견으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자의 의견을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4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사항)

- 1)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심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

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심사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25조 (심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1)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평가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 2)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3) 심사자는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에 포함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평가는 옳지 않다.
- 4) 심사자는 심사결과서 작성시 시사의견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5) 심사자는 심사한 논문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요해서는 안된다.
- 6) 심사자는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7) 심사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평가를 마치고 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진실성 검증의 책임주체 연구윤리위원회)

-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운영한다.
- 2) 부정행위 제보가 신고접수 되는 일로부터 15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운영위원, 편집위원, 전문연구위원을 포함하여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한다.
- 4)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0%이상 포함한다.

제27조 (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개최 시 위임장은 출석자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

고를 요구할 수 있다.

-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28조 (진실성 검증 원칙)

-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3)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2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3)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4)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5)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 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30조 (진실성 검증의 절차)

- 1)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 2)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 3)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연구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4)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6)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①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소는 이 사실을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②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 7)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 기준 3년간 연구소에 보관한다.
- 8) 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제보의 내용
 - ②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③위원회의 위원 명단

- ④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⑤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⑥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⑦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Ⅵ.논문심사규정

제32조(편집위원회의 역할)

- 1)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 분야의 전문 학자들 가운데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작성자와 동일한 소속 기관을 최대한 피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
- 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과 논문 투고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투고자에게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4) 편집위원회는 게재가로 종합 판정된 논문 수가 게재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본 연구소 설립 목적과 활동 사항에 근거하여, 해당 호에 게재할 논문을 최종 결정한다. 나머지 논문은 다음호에 게재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회는 『인격주의 생명윤리』의 취지 및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의 경우, 심사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게재여부를 다시 정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회는 서평과 의론(오피니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33조(편집위원회 개최시기)

편집위원회는 각 호당 2회 개최한다. 제 1차 편집위원회는 원고투고 마감일 이후 2주 이내에, 제 2차 편집위원회는 제 1차 편집위원회 이후 4주 이내에 개최한다.

제34조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원고 송부)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된 연구에 한해 논문 1편당 본교 또는 타교의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에게 평가를 위촉하여 심사를 한다. 각 투고 논문은 투고자에 관한 인적사항과 연구비 지원여부가 삭제된 채로 송부된다. 단, 학술대회 발표에서 논평을 반영하여 수정한 논문은 1인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5조 (심사 기준 및 심사보고서)

- 1) 심사위원은 논문의 체재와 형식, 논문의 내용, 초록의 정확성 영역에 대해 심사한다.
- 2) 논문의 내용 영역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을 참작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① 연구주제의 적절성

- ② 연구관점의 참신성
- ③ 연구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 ④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 ⑤ 연구결과의 기여도

3) 심사위원은 위 항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 심사 항목을 종합한 평가 의견(‘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을 기재한다. ‘게재 불가’의 경우에는 불가사유를, ‘수정 후 게재’의 경우에는 수정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무수정게재’의 경우에도 해당 논문의 우수한 점과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기재한다.

제36조 (심사결과 종합 및 게재여부 판정)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심사위원 3인의 심사보고서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판정 기준
3			게재 적합
2	1		게재 적합
1	2		게재 적합
	3		편집위원회 재심사
2		1	편집위원회 재심사
1	1	1	편집위원회 재심사
	2	1	게재 불가
1		2	게재 불가
	1	2	게재 불가
		3	게재 불가

제37조 (심사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모든 투고자에게 각 심사위원이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최종 심사결과와 함께 통보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하도록 하여 수정된 논문을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시 제출된 논문에 관한 수정요구 반영도를 검토하여 최종게재판정을 내린다.

(단, 수정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서 통보한 시일 내에 다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게재불가 처리한다.)

제39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투고자의 재심 요청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0조(회의록)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논의와 결정 사항을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 (게재예정 증명서 발급)

최종 심사결과에서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